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범죄의 범위 확대 등〉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51호)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54호)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2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개	요		1
【강득구의원안】			1
【김정재의원안】			2
【배현진의원안】			3
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12

I. 개 요

【강득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 31.

다. 회부연월일 : 2025.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김정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배현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 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강득구의원안은 1)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불고지죄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①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¹⁾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2) 동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 또는 “퇴직 후의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현행 “재직 중의 사유로” 부분 삭제)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며,

1) 그 밖에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의 죄,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죄,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를 열거하고 있음.

3)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불고지죄 제외)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강득구의원안 제37조제2항 신설, 제65조제4항 삭제 및 제65조의2 신설 등).

김정재의원안은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의 범위에 현행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불고지죄 제외) 외에 살인 등 일정한 범죄²⁾까지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2) 동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 또는 “퇴직 후의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현행 “재직 중의 사유로” 부분 삭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김정재의원안 제65조제4항),

배현진의원안은 현행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불고지죄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외에 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범죄를 범한 경우로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배현진의원안 제65조제4항).

2)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현 행	강득구의원안	김정재의원안	배현진의원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 법」 제2편제1장(반 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 법」(제10조는 제외 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 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민법」 제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 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5조의2(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 상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 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외 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 조는 제외한다), 「형 법」 제250조 및 제29 1조의 살인죄를 비롯 한 강력범죄를 범하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 9조에 따른 이자를 가 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 법」 제2편제1장(반 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 법」(제10조는 제외 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 이 확정된 경우

현행	강득구의원안	김정재의원안	배현진의원안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		

현행	강득구의원안	김정재의원안	배현진의원안
	<u>조제3항 및 제6조</u> <u>(제2조제1항과 제</u> <u>3조제3항의 미수</u> <u>범으로 한정한다)</u> <u>의 죄</u> <u>다. 「특정범죄 가중</u> <u>처벌 등에 관한</u> <u>법률」 제5조, 제5</u> <u>조의2, 제5조의4</u> <u>및 제5조의5의 죄</u> <u>라. 「성폭력범죄의 처</u> <u>벌 등에 관한 특례</u> <u>법」 제3조부터 제1</u> <u>0조까지 및 제15조</u> <u>(제3조부터 제9조</u> <u>까지의 미수범으로</u> <u>한정한다)의 죄</u> <u>마. 「아동·청소년의</u> <u>성보호에 관한 법</u> <u>률」 제7조, 제8조</u> <u>및 제11조부터 제</u> <u>16조까지에 따른</u> <u>죄</u> <u>바. 「군사기밀 보호</u> <u>법」 제11조, 제11</u> <u>조의2, 제12조, 제</u> <u>13조, 제13조의2</u> <u>및 제15조의 죄</u> <u>사. 「전기통신사업법」</u> <u>제95조의2제1호의2</u> <u>및 제1호의3의 죄</u> <u>② 인사혁신처장은 제</u> <u>1항에 따라 이 법의</u> <u>적용 대상에서 제외하</u> <u>려는 경우에는 적용</u> <u>대상자의 범죄경력자</u> <u>료 또는 교정시설 수</u> <u>용 정보를 관계 기관</u>		

현행	강득구의원안	김정재의원안	배현진의원안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생략) <신설>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강득구의원안	김정재의원안	배현진의원안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과 제4항-----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형벌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일반적 제도로 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 없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그리고,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불고지죄 제외)에 규정된 죄(이하 “반국가범죄”라 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재직 중의 사유로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급여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법상 가중적 급여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바,

강득구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거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나 적용받을 자를 적용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구분한 후 전자에 해당하는 범죄를 불고지죄를 포함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로 규정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범죄를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⁵⁾⁶⁾ 이에 해당하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5. (생략)

②~⑥ (생략)

- 5) 장득구의원안에 따라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의 유형과 종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불고지죄를 포함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 전체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살인,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절도의 상습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등의 상습범과 그 미수범, 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의 상습범과 그 미수범,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의 상습범과 그 미수범, 상습적 집단폭행 등과 그 미수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상습 강도 및 절도 등, 강도 상해 등의 재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과 그 미수범, 특수강간 등과 그 미수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그 미수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과 그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과 그 미수범, 강간 등 살인·치사와 그 미수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탐지·수집,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 불법 거래,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군사기밀 탐지·수집 등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불이행,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불이행이 해당됨.

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⁷⁾

김정재의원안은 전·현직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범죄의 범위에 현행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불고지죄 제외)에 규정된 죄 외에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배현진의원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에 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른 급여 제한 제도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범죄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비난가능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형벌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6) 강득구의원안 제6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 이적의 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군형법」이 원칙적으로 군인에 대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군형법」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7) 그 밖에 급여를 받은 사람이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불고지죄를 제외시키고 있고, 선고형의 수준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적 제도로써 공무원연금제도의 설계나 운영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공무원 범죄의 추이 및 현황을 비롯하여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감정 등 입법적 환경과 그 밖에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개정안들은 재산권의 일종인 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 법률에 요구되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사항의 경우 현행법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첫째,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현행 대비 확대하는 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반국가범죄 이외의 범죄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강득구의원안에서

반국가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로 그 요건을 현행(“형이 선고된 경우”)보다 일부 엄격하게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벌에 따른 급여수급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침익적 규제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⁸⁾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제도상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반국가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동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헌정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위해나 공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켜 공익을 저해하는 영향력 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범한 반국가범죄가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엄중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국가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 급여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8) 반국가범죄 등 일정한 범죄를 사유로 하는 제재의 내용을 급여 제한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강화하고 있는 강득구의원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서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입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형벌에 따른 연금법상의 급여 제한은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 외에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는 불이익 조치로서 급여수급권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비록 헌법이 금지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반국가범죄와 그 밖의 다른 범죄를 구별하여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규제적 조치의 확대 여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하여야 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부정적 파급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과 종류, 선고형의 수준⁹⁾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익적 효과가 큰 불이익 조치의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의 범주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9) 강득구의원안은 반국가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배현진의원안은 반국가범죄의 경우 현행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실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밖의 범죄의 경우 선고형을 반국가범죄에 비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급여 제한 요건으로서 범죄의 유형과 종류별로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공무원의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 연금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의 요건으로서 “재직 중의 사유” 외에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동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강득구의원안 및 김정재의원안은 현행법상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 중 “재직 중의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퇴직 후에 범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제적 조치가 이루어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의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된 것은 2009.12.31.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 개정 전에는 그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재직 중의 사유”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당시 해당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사유”에까지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 동 급여 제한의 요건을 현행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상기 위헌소원 사건에서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급여 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먼저, 이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1) 공무원은 퇴직 후라도 반국가적 활동에 나설 경우 국가의 안위에 훨씬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직 시기를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특수성,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였던 기여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반면, 헌법재판소는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 바,¹⁰⁾

그 논거로는,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의무(성실의무 등)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부과되는 의무로서 퇴직한 후에도 이를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수급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

10) [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도 계속 재직 시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고,

2) 공무원이 반국가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때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위해가 클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차이는 퇴직급여수급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그 근무기간 등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국민의 안녕에 미치는 정도를 구분함이 없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을 퇴직 후의 사유에 기하여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기 위헌소원 사건에서 제시된 찬반 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동 사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환경의 조성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규제적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연금 급여 제한을 퇴직 후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 후의 사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셋째, 급여를 받은 사람이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전을 환수함에 있어서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강득구의원안은 안 제37조제2항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7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③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급여의 환수 사유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당초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금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말함)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¹¹⁾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급여수급권이 박탈됨에 따라 기지급

11)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상응하게 급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급여수급권이 박탈됨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는 그 실체적 요건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급여의 환수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 부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급여수급권이 박탈됨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를 당초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급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넷째, 개정안들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 내지 요건 등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김정재의원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범죄를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배현진의원안의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요건을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형벌상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예기간 없이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징역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법 적용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²⁾

한편, 강득구의원안 및 김정재의원안은 현행법상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요건 중 “재직 중의 사유”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

12) 아울러, “실형”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서는 이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형”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종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는 바, “실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강득구의원안 및 배현진의원안은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하는지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두 개정안의 경우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기 위헌결정 대상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그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적용상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적 의도가 법문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2